

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부정행위'

전자기기 반입금지...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반드시 숙지해야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는 안 된다. 지난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어팟 등 교고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심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당부했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통신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철저히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사프스, 아날로그 시계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를 책

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를 넣어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사프스는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73명) 보다 많았다.

탐구영역 문제를 풀 때는 1·2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적는 칸을 추가했다.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을 혼동해 답안을 잘못 적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까치밥 주렁주렁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霜降)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대구 북구 금호동의 한 농가 김나루에서 탐스럽게 익은 감을 맛보려던 까치가 인기척에 놀라고 있다.

광주·전남 공기업서 채용비리 32건 적발...징계 2건 불과

광주·전남지역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32건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34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62건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6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9건을 수사의뢰했고,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또 업무 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경고를,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14건이 적발된 가운데 징계요구 1건, 주의경고 9건, 제도개선 등이 4건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1건, 주의경고 10건, 제도개선 등 6

건으로 총 18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는 광주 징적 1건, 전남 권역 1건 등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가정폭력피해자쉼터, 4곳 중 3곳 미설치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6%에 해당하는 17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자체 중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55곳(설치율 24%)에 그쳤다.

특히 광역단체 중 세종시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의 경우 쉼터가 1곳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 2017년 11

월 서울소재 한 쉼터에 가해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라며 "가해자에게 피해자 위치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정폭력피해자쉼터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1곳)로 31개 지자체 중 설치율이 35.5%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지자체 중 2곳만이 설치돼 그 비율이 8.7%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고통 받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쉼터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슈 판결

“타인정자로 낳은 자녀 남편 친자”

대법 “혈연기준 소송 부적합”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이 동의했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민법상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됐으니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 실제 모습을 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며 “남편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동의를 반복하고 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관계를 정하면,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친자관정을 하거나 부부간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데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지,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아가 발견, 자활치료 중인 민혜균